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19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년 12월 27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11월 13일]

[가맹본부의 대표
이 메 일 주 소 :
sms94222@naver.co
m]

[(abc) 아임베베]

정 보 공 개 서

[(abc)아임베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6. 11.

[(abc) 아임베베강남서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0길 23-14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661-933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4-267-134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661-933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0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2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2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abc)아임베 베강남서초	(abc)아임베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0길 23-14 2층 124호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01.01	송미선	1661-9334	0504-267-134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90-94-0128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abc)아임베베]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abc)아임베베강남서초점	
상 호 ^②		
상표(서비스표) ^③		상표 출원 준비 중
광 고 ^④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773	0	10,773	44,602	11,534	10,773
2022년	35,102	0	35,102	95,230	17,161	14,329
2023년	12,869	6,904	5,965	149,530	4,692	4,692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1)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미선	대표	2013~2020	원장	산후조리원 운영
			2021.1~현재	대표	(ABC)아임베베강남서초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없음]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아임베베]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3년 11월 14일(가맹사업 계약 체결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1월 1일)

2. [아임베베]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임베베	아임베베	송미선	2023.11~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0길 23-14 2층

3. [아임베베]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임베베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	인력파견, 산후도우미 전자바우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임베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1개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1	3	1	-	1	1	-	1
서울	4	1	3	1	-	1	1	-	1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아임베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1	-	-	-	1

6. [아임베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임베베]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개)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1	해당없음						
서울	1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사업개시일이 2023년 11월이며 2023년 12월말 현재까지 발생된 매출은 없습니다.
- 매출액 산정기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상 산모 이용자수를 근거하여 추정 할 수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2023년 12월말 현재까지 산모 이용자는 없습니다.

8. [아임베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임베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	2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아임베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651	3,651		
광고	소계		3,651	3,651		
	인터넷	연중	3,651	3,651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가든파이버 지점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02-2043-022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리은행 내방하여 예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의 지도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해당사항 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임베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0,000				
가입비	20,000	계약 체결 직후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및 교육 인건비 지출 포함됨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	--------------------------	--	---------------------

2)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총계				
(현금)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담보목적물				
...				

3)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0,000
가입비(교육비 포함)	20,000
교육비	
개점행사비	
(현금)보증금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가맹본부 (전화:1661-9334)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기존 가맹사업자(지점) 존재여부 확인 → 가맹사업자 개설관련 조건 설명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유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임베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 원)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20,000	총액의 10%	30%	30%	3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 15일	계약일+ 1월	계약일+ 2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330	매월 말일		소멸성비용	콘텐츠개발
광고 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매월 말일			
관측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매월 말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내용별 차등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타사 브랜드 겸업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만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타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중복영업을 할 수 없다.	수시	
관할지역	가맹본부와 사전 약정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님된다.	수시	
상호, 상표 등의 사용	가맹본부와 사전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님된다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는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폐업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관할했던 지역에서의 영업권은 가맹본부에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최초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

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적 손실일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abc)아임베베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해당사항 없음]

- 1) 귀하가 [아임베베 지사]운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abc)아임베베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가 (abc)아임베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용역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해당사항 없음]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③	비고 ^④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경쟁사)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거래상대방 (고객)①	상품·용역명②	제한내용 및 조건③	위반시 책임④	비고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2023년 고시 기준)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바우치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기본(664,000)		표준기본(1,328,000)		연장기본(1,992,000)		
단태아	첫째아	A-가-①	5	10	15	598,000	66,000	1,062,000	266,000	1,394,000	598,000	
		A-통합-1				518,000	146,000	916,000	412,000	1,195,000	797,000	
		A-라-①				418,000	246,000	704,000	624,000	956,000	1,036,000	
							단축기본(1,328,000)		표준기본(1,992,000)		연장기본(2,656,000)	
	둘째아	A-가-②	10	15	20	1,222,000	106,000	1,633,000	359,000	1,912,000	744,000	
		A-통합-2				1,062,000	266,000	1,394,000	598,000	1,620,000	1,036,000	
		A-라-②				863,000	465,000	1,096,000	896,000	1,328,000	1,328,000	
							단축기본(1,328,000)		표준기본(1,992,000)		연장기본(2,656,000)	
	셋째아	A-가-③	10	15	20	1,248,000	80,000	1,673,000	319,000	1,965,000	691,000	
		A-통합-3				1,089,000	239,000	1,414,000	578,000	1,647,000	1,009,000	
		A-라-③				890,000	438,000	1,135,000	857,000	1,381,000	1,275,000	
						단축기본(1,656,000)		표준기본(2,484,000)		연장기본(3,312,000)		
쌍태아	둘째아	B-가-①	10	15	20	1,590,000	66,000	2,136,000	348,000	2,517,000	795,000	
		B-통합-1				1,424,000	232,000	1,863,000	621,000	2,219,000	1,093,000	
		B-라-①				1,159,000	497,000	1,466,000	1,018,000	1,788,000	1,524,000	
							단축기본(2,324,000)		표준기본(3,486,000)		연장기본(4,648,000)	
	셋째아	B-가-②	10	15	20	2,136,000	188,000	2,847,000	639,000	3,517,000	1,131,000	
		B-통합-2				1,939,000	385,000	2,596,000	890,000	3,216,000	1,432,000	
		B-라-②				1,645,000	679,000	2,220,000	1,266,000	2,764,000	1,884,000	
						단축기본(3,984,000)		표준기본(5,312,000)		연장기본(6,640,000)		
삼태아 이상	C-가형	15	20	25	3,904,000	80,000	4,781,000	531,000	5,445,000	1,195,000		
	C-통합형				3,586,000	398,000	4,250,000	1,062,000	4,980,000	1,660,000		
	C-라형				3,068,000	916,000	3,665,000	1,647,000	4,316,000	2,324,000		

[귀하가 위 표의 정부고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서비스·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산후도우미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abc)아임베베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환경에 따라 영업지역이 2개~3개의 구단위로 선택될 수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임베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0	10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임베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일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여야 한다.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1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7조1항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7조1항3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6조 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6조 2항
○ 취급하는 서비스·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6조 3항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6조 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8조2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8조2항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8조2항3호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채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28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8조2항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28조2항5호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8조2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28조2항8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지역의 변경	8조 (4)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적극적 협력 강화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본부 (1661-933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②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관할 지역 내에서] 귀하가 [아임베베]와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해당사항 없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임베베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서 제32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 의 의무]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
3.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4.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5.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사업자” 의 의무]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서비스 ·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4.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5.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6.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00p~0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9~28	
사무실 임차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2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6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5(1일)	
관리사 채용 공고	- 산후도우미 관리사 면접 및 채용	상시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4(1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	D-2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19(3일)	
사업자등록증 신청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D-18	
제공기관등록신청	- 관할 보건소 제공기관 등록 신청 및 현장 실사	D-15~5(10일)	
교육실시	- 운영교육 실시	D-9~2	
산후도우미센터 운영개시	-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는 경우	시험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 에 서 분할지급 가 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 일 로 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영지도계획서에는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임베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기한	비고 ^②
신규 교육	회사 소개, 특화서비스, 경쟁력, 차별화포인트, 기대효과 상담,사회전자바우처 실무 시스템 등	1:1 맞춤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까지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임베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사항 없음]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 서초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4 2층
2	서울	강동송파하남 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L-7144
3	서울	용산마포중구 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7-3

[상기 직영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7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82,323	매출액은 첨부된 손익계산서상의 내용입니다. (연간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직영점 전체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여 2로 나누어 산정함. 단! 총 3개 직영점 중 매출이 없는 1개 점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함)

[※ 당사는 면세업자로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별첨1] 2021~2023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